

	정 보 공 개 서 등 록 번 호	20250452
	정 보 공 개 서 최 초 등 록 일	2025.04.17.
	정 보 공 개 서 최 종 등 록 일	2025.04.17.

닭튀브로 정보공개서

[닭튀브 정자점]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닭튀브 정자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21, 상가동 1층 105호(정자동)		
대표전화번호	1800-5101	대표팩스번호	-
홈페이지	-	이메일	ojm9857@gmail.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닭튜브 정자점	닭튜브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21, 상가동 1층 105호(정자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2024.03.14.	오종명	1800-5101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433-16-02494	

※ 가맹본부 상호는 개인사업자 등록 시 지역적 특색을 알리고자 ‘정자점’이라는 명칭을 부여·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 직영점으로 운영한 가맹본부입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없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닭튜브로	-
상 호	닭튜브로 OO점	-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250017923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541,343	-	-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는 현재 2024년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로서 재무제표 확인이 6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에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매출액을 근거로 매출액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오종명	대표	2024.03. ~ 현재	닭튜브 정자점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전본 이미지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서비스표)		출원 : 2025.02.06.	출원번호 : 4020250017923	오종명	-
권리내용	영업표지 또는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품·용역에 사용				

- ※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닭튜브로] 가맹사업 현황

1. [닭튜브로]를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준비 중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4년 03월 14일)

2. [닭튜브로]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닭튜브 정자점	닭튜브로	오종명	가맹사업 준비 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21, 상가동 1층 105호(정자동)

3. [닭튜브로] 업종

영업표지	업종	
닭튜브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닭튜브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닭튜브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닭튜브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닭튜브로] 외에 바로 전 3년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해당없음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닭튜브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달투브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달투브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닭튀브로] 브랜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4.01.01.~12.31.	-	-	-	-
광고	-	2024.01.01.~12.31.	-	-	-	-
판촉	-	2024.01.01.~12.31.	-	-	-	-

※ 가맹본부는 현재 2024년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로서 재무제표 확인이 6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예치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SGI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닭튀브 정자점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달류브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불가.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 및 지원대가
교육비	3,300		교육 이후 반환 불가.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진행 시 반환되지 않음
합계	8,800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0(없음)	가맹계약 체결 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	-

※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 계약 체결 시 우리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무이자)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종료 시 전액을 귀하에게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0
합계	8,8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27,500	2,75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약 33㎡ 기준 (약 10평)
간판·사인물 등	협력업체 (미지정)	3,850	해당없음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
설비 및 집기	【별첨2】 참조	6,600	해당없음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 전	변동될 수 있음
초도물품	【별첨3】 참조	4,400	해당없음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 전	변동될 수 있음
합계	-	42,350	-	-	-	오프라인 기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가맹점사업자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 철거, 전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화장실, 정화조, 도시가스, 파사드, 소모품 등 견적 외 품목은 건물의 구조·상가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도면제공비 금삼백삼십만원(₩3,300,000/부가세포함)과 디자인검수비 3.3㎡당 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희망자는 점포의 선정에 관한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점포를 선정함에 있어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의 특성, 통행인의 구매 성향, 인접 주요 시설물, 업종별 특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가맹희망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점포선정 과정에 있어 어떠한 구속력 있는 보증이나 확약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자
종업원	특별한 사유 없음	- 만 18세 이상일 것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닭튜브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 열 티	가맹본부	없음	-	소멸성	무형의 자산	-
교 육 훈 련 비	가맹본부	실비	시행 전 별도 개별 통지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 실시 후	-
광 고 분 담 비	가맹본부	별도협의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실시 후	-
판 측 분 담 비	가맹본부	별도협의		판측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실시 후	-
POS 사 용 료	협력업체	별도협의	별도협의	-	-	통일성을 위해 권장
키 오 스 크 사 용 료	운영업체	별도협의	별도협의	-	-	통일성을 위해 권장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시행업체	견적내용에 따라 다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점 포 환 경 개 선 비 용	시행업체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개별 청구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시행업체	견적내용에 따라 다름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 연 이 자	가맹본부	연20%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직전 사업연도 : 2024년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 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가맹비	가맹비의 50%	가맹계약 연장 시작 3일 이전	연장 후 반환 불가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승계의 경우 ‘없음’	○ 본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단,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신규 가맹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경우,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귀하는 영업 양도·양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수인에게 당사의 운영 제도, 규약 및 금전적 지급 의무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없음)	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달튜브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달투브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달투브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직전 사업연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2) 당사가 **[달투브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4】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o 1회 위반 : 구두 경고 - o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 o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공급품목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 o 1회 위반 : 구두 경고 - o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 o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4】 참조	【별첨4】 참조	변동 시 통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닭튀브로	-

※ 당사의 판매 방식은 매장판매형, 포장판매형 및 배달판매형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매장판매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는 매장의 규모, 상권의 특성 및 기타 영업 환경에 따라 포장판매형 및 배달판매형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매장의 효율적 운영과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판매방식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매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단, 특수상권 ¹⁾ 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설정함)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기재

※ 동일 업종이 아닌 영업표지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은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휴게소, 종합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과 같이 높은 집객력이 확보된 지역으로서, 외부와 물리적·기능적으로 단절된 특정 공간 내에서 주로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독립된 상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권은 점포 소재지의 반경거리와 무관하게 기존 영업지역과 구별되는 독립적 영업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0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0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닭튜브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닭투브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달투브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또는 상호 약정한 날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제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2항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4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해지)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 이 2회 이상 로열티 등의 정기납입경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갑” 의 영업 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갑” 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2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갑” 과 약정한 광고·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갑” 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후 7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본 계약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갑” 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갑” 의 영업표지를 소모품과 비품 등의 제작·인쇄를 위해 사용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영업표지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의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기타 “을” 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 “을” 이 제1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나. (즉시해지)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 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제35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5조 제2항
○ “을” 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2항

○ “을” 이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2항
○ “을” 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5조 제2항
○ “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5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본 계약은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경우, 또는 “갑”과 “을” 상호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42조 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의 품목·거래조건 등의 계약 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24조에 따라 변경된다.	제42조 제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맹점사업자는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 문의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예정일 30일 전까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10영업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 신청(예정일 30일 전까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10영업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닭튜브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치킨 등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가맹본부 문의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닭튜브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본부와 별도 협의	주 6일	가맹본부 문의

-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라며,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휴업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필수 아님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당사는 귀하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지침 준수 등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서비스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일반방문 → 주문 → 서비스 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달투브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주들의 행사 동의 → 행사 시작(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 가능함)	- 대중매체 광고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관측행사	통상적인 전체행사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 행사 시작	- 월별관측행사 - 전체 가맹점사 업자의 70%이 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기타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승인한 시안 및 운영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40조 【손해배상】

- 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 이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담보제공 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 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36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 이 제37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하거나 경업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 이 제38조를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필수품목 등을 자점매입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을” 이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판매방식이나 유통채널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1일당 금오만원(₩50,000) × 잔여계약기간일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을”이 판매 매출액의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로열티를 불완전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누락 매출액에 해당되는 로열티 금액의 10배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위약벌로 기존 미이행된 로열티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제41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조건】

- ① 가맹점 개점 후 최초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1. 가맹비는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급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의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로열티는 “을“이 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갑“이 제공하는 영업표지와 가맹점운영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후불제 정기지급금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반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 ③ 제40조의 위약벌 규정과는 별개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약정된 계약기간 내에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이 본 계약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한 가맹비 및 교육비, 창업시 할인된 공사비용,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된 제반 비용 일체를 “갑”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반환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사유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지원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D-3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롭게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협의하여 부담	가맹본부 문의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가맹본부 문의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닭튀프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달류브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선택)	기한	비고
최초교육	회사 소개 매뉴얼, 운영방침 등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점포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개점 승인 조건
수시교육	매뉴얼 · 학습 · 영업방침 변경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시 안내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현장지도 요청 내용	개별교육	교육실시 시 안내	선택 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계약위반 제발방지 교육) 등	개별교육	교육실시 시 안내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달류브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교육	3일	3,300	필수 교육, 개점 승인 조건
수시교육	최소 1일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특별교육	최소 1일	1인 1일 기준 110, 출장비 별도	선택 교육, 요청 시 실시
재교육	최소 1일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 교육기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점 이후 교육·훈련시 출장비(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출장비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출장비를 5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출장비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 시까지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 또는 영업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교육 또는 가맹계약의 위반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되는 재교육, 특별교육에 대하여,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참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닭튜브 정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21, 상가동 1층 105호(정자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0년 10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전 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41,34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준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최근 3년간 재무상황(직전 3개 사업연도)

□ 2024년(개업일 2024년 3월 14일)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설비 및 집기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원부재료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닭튜브

D a k t u b e

닭튜브 포장
TAKE OUT

불닭(국내산), 순살(브라질산)

치킨 메뉴 Chicken menu

후라이드
12,000

양념/매운양념
13,000

간장/핫간장
13,000

뿌링치즈
13,000

마늘
14,000

청양크리미
14,000

★ 모든치킨메뉴 반반가능 순살변경 +1000원 닭다리변경 +2000원 ★

사이드 메뉴

감자튀김	6,000	치즈볼	3,000
뿌링치즈감자튀김	7,000	뿌링 치즈볼	3,500
떡고치(양념/매콤양념)	2,500	소떡소떡(양념/매콤양념/치즈)	2,500
동집튀김	6,000	한입붕어빵	3,500

추가

생맥주1000cc	7,000	양념소스 / 무추가 / 매운양념소스	500
참이슬 / 처음처럼	4,000	특제간장소스	1,000
콜라 500ml	1,500	청양크리미소스 / 치즈할라피뇨소스	1,000
콜라 1.25L	2,500	레드숯불소스 / 마늘갈릭소스	1,000

※ 경영 전략과 시장 환경에 따라 품목 및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명시된 품목은 시장 상황의 변동 또는 당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추가, 변경, 조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위 품목과 관련하여 본 문서 제공 이후 변경된 내용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경영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5

가맹점 순회 점검표(가맹본부의 사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